

# 서울교육대학교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간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서

서울교육대학교(이하 “서울교대” 라 한다)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공단” 이라 한다)은 상호 신뢰 바탕으로 공동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상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본 협약에서 양자를 통칭하여 “양 기관” 이라 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공단이 보유한 가상현실 스포츠실 통합플랫폼을 서울교대에 설치·운영함에 따라, 실감형 체육교육 환경 조성, 콘텐츠 검증, 교원 역량 강화 및 관련 연구 활성화를 위한 상호 교류 및 협력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 내용) 양 기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상호 협력한다.

1. 공단은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

- 가. 가상현실 스포츠실 통합플랫폼 설치 및 유지보수 전 과정을 지원하며, 관련 비용을 부담한다.
- 나. 가상현실 스포츠실 통합플랫폼 운영에 필요한 콘텐츠·기술지원, 장비 점검 및 사후 관리(A/S)를 수행하며 관련 비용을 부담한다.
- 다. 서울교대가 교육 및 연구 목적으로 가상현실 스포츠실 통합플랫폼을 활용하는 것을 허용한다.

2. 서울교대는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

- 가. 가상현실 스포츠실 통합플랫폼 설치에 필요한 교내 공간을 무상 제공하며 가상현실 스포츠실 통합플랫폼 사용에 따른 전기료 등 제반 공과금을 부담한다.
- 나. 공단의 가상현실 스포츠실 통합플랫폼 콘텐츠 테스트, 정기 점검 등을 위한 방문에 협조한다.
- 다. 가상현실 스포츠실 통합플랫폼을 교육 및 연구 목적으로 활용하고, 공단이 활용 실적 공유를 요청하는 경우 구체적인 공유 범위 및 절차 등을 협의한다.

3. 기타 양 기관이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협력에 따른 비용 부담) 제2조에 따른 협력 사항 수행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각 기관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비용 분담 사항은 양 기관이 별도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4조(운영 및 관리) ① 양 기관은 가상현실 스포츠실 통합플랫폼의 콘텐츠 및 센서 연동 등을 검증하고, 사용성 평가, 교원 교육 등에 활용한다.

② 가상현실 스포츠실 통합플랫폼 시설 및 장비는 상호 협의에 따라 지정된 양 기관 담당자가 공동으로 관리한다.

③ 필요시 양 기관은 정기 운영회의를 통해 개선사항을 논의한다.

제5조(설치 사양 및 일정) ① 가상현실 스포츠실 통합플랫폼은 이전 가능한 구조물로 설치하여 공간 부담을 최소화하고 설치 장소 이전이 필요할 때는 양 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공단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설치를 완료하며 서울교대는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한다.

제6조(비밀 유지) ① 양 기관은 본 협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상대 기관의 업무상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 의무는 협약 종료 후에도 유효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1. 본 협약 체결 이전에 이미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는 정보 또는 이미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공지의 사실인 경우
2. 본 협약을 위반하지 않고 상대 기관 이외에 적법한 출처로부터 정보를 알게 된 경우
3. 관계 행정기관 또는 법원 등의 적법한 절차에 의한 요구가 있는 경우
4. 외부자문 등을 위하여 정보의 공개가 필요한 경우. 다만, 이 경우 공개 당사자는 해당 정보를 제공받는 자로 하여금 본 협약과 동일한 비밀 유지 의무를 부담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정보의 이용을 목적 범위 내로 한정하여 그 밖의 자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위 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상대 기관에게 손해를 가한 당사자는 이로 인해 상대 기관에게 발생한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7조(효력 및 유효기간) ① 본 협약은 양 기관의 대표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3년간 유효하다.

② 협약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어느 일방의 해지 통보가 없는 경우, 본 협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된다.

제8조(협약의 변경·해지) ① 양 기관은 상호 협의에 따라 본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그 변경은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어느 일방은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지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최소 30일 전에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 양 기관이 협약 해지에 합의한 경우
2. 일방 당사자가 협약의 내용을 위반하거나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3. 기관 내부 사정으로 협약 유지가 곤란한 경우
4.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

제9조(기타) ① 양 기관은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협약서상의 지위, 권리 또는 의무를 임의로 제3자에게 양도, 담보제공 또는 대여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②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양 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본 협약의 증명을 위하여 협약서를 2부 작성하고, 양 기관이 서명·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2025년 12월 10일



서울교육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서울교육대학교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96  
총장 장신호



KSPPO 국민체육진흥공단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324  
이사장 허형수

